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7조 (대불금상환등) ① (생략)</p> <p>1. <u>10만원 미만은 4회</u></p> <p>2. <u>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u></p> <p>3. <u>20만원 이상은 12회</u></p>	<p>제 7조 (대불금상환등) ① (현행과 같음)</p> <p>1. <u>10만원 미만은 3회</u></p> <p>2. <u>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u></p> <p>3. <u>30만원 이상은 12회</u></p>

서산군의회 휘장규정

서산군의회 휘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산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뱃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휘장의 규격등) ① 의회 휘장과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의 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 양 : 의회를 상징하는 원형안에 "議"자 표시
3. 색 상 : 무궁화 형상, 원형 "議"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議"자를 표시한다.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錐形으로 한다.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뱃지는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3과 같다.

1. 무궁화형 (5자) : 직경 1.7cm
2. 원 형 : 직경 1cm
3. 원 내 글 자 : 직경 0.7cm
4. 재 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제 3조 (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회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회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회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등에 의회 회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의원직 이외의 겸직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 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원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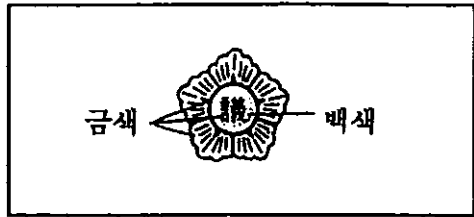
제 6조 (뱃지의 패용) ① 뱃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뱃지는 의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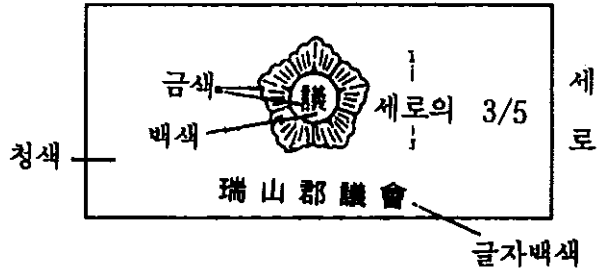
[별표1] 회장모형도



(설 명)

- 의 형 : 우리나라의 무궁화꽃
- 중 앙 : 모형위에 의회를 상징하는 "議"자 표식

[별표2] 의회기 규격 모형도
가 로



[별표3] 서산군의회의 의원 뱃지제식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 격

모 형	내 용	규 격
무 궁 화 형	5지	직경 1.8cm
화 반 원 형	1	직경 1.0cm
원 자 반	議	직경 0.7cm

다. 재 료

銀으로 하되 "가"의 색채중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서산군의회포상규정

서산군의회포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포상대상) 포상은군의회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행한다.

제 3조(포상권자) 포상은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 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등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 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 6조(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감사장(패), 공로패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 7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 서식에 의한 다.

② 제 1항의 포상자(패)은 상금, 기타 부상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8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연말에 행함을

원칙으로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조(포상절차) ① 제 5조내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의원 3인이상 연서로써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사무과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사과장 및 전문위원이 한다.

제 10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위원의 수는 3-5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1조(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 12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6호 서식의 포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산군의회의장

(인)

[제 2호 서식]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산군의회위원장 (인)

[제 3호 서식]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산군의회위원장 (인)

[제 4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군 번(군인의 경우)
(4) 국 적(외국인에 한함)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 근무(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3) 년 월 일	(24) 내 용
(27) 공 적 사 항			

[제 5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요구자	소 속 (주 소)	직 위	성 명	공 적 개 요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				
이 유				
19 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		
		인		

※ 공적심사 대상이 많을시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제 6호 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 는 부 상	비고
				직위또는 직 명	소 속 (주소)	성 별	성 명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追更財源分析(一般會計)

(單位：千圓)

財 源	
合計	2,343,088
○ 追加歲入	— 1,704,484
○ 地方稅	— 804,569
○ 稅外收入	— 1,188,378
○ 補助金	— △288,463
○ 國 費	— △873,981
○ 道 費	— 585,518
○ 既存豫算轉用	— 638,604

歲 出	
合計	2,343,088
○ 國道費補助事業	— 126,009
○ 國 費	— △873,981
○ 道 費	— 585,518
○ 郡費負擔	— 414,472
○ 人 件 費	— 428,322
○ 官署運營費	— 114,553
○ 經常事業費	— 404,675
○ 主要事業費	— 857,783
○ 其他經費	— 93,430